위생용품소분업 신설에 따른 민원설명회

2026.11.11.

식품의약품안전처

Contents

1 위생용품 관리법령 체계

2 위생용품 관리법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등

3 자주하는 질문

01

위생용품 관리법령 체계

위생용품 관리법 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총36조 및 부칙 12조)

총칙	영업관리	기준·규격·표시기준 등	검사 등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보칙	벌칙	부칙
목 적	영업의 신고	기준 및 규격	자가품질 검사 및 위탁검사	시정명령	위반사실의 공표	벌칙	시행일
정 의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표시기준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폐기처분 등	영업자단체의 설립	양벌규정	적용례
	영업신고의 제한	허위표시 등의 금지	출입·검사·수거 등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위생용품의 재검사	과태료	경과조치
	영업자의 지위승계	식품 오인 위생용품 판매금지		품목 등 제조정지	위생용품 위생감시원		다른 법률의 개정
	영업자 등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폐쇄조치 등	소비자위생용품 위생감시원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국고 보조		
	위생교육			청문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과징금	수수료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시행령 : 총15조 부칙2조 별표3
- 시행규칙 : 총34조 부칙9조 별표9 서식25

위생용품의 정의 및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 정의)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

위생용품의 종류		적용범위	예시
1	세척제	과일, 채소,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행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3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	
4	일회용 컵	식품과 접촉하는 컵(식품이 담긴 컵은 제외)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5	일회용 숟가락	식품과 접촉하는 숟가락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6	일회용 젓가락	식품과 접촉하는 젓가락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7	일회용 포크	식품과 접촉하는 포크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8	일회용 나이프	식품과 접촉하는 나이프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9	일회용 빨대	식품과 접촉하는 빨대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10	화장지	화장실용 화장지(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화장지) 및 미용 화장지(일상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되는 화장지)	
11	일회용 행주	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	
12	일회용 타월	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	

위생용품의 종류		적용범위	예시
13	일회용 종이냅킨	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 냅킨(각테일용 냅킨 포함)	
14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15	일회용 이쑤시개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 (식품용 기구 제외)	
16	일회용 면봉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외)	
17	일회용 기저귀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위생깔개(매트) 포함]	
18	일회용 팬티라이너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의약외품 제외)	
19	물티슈용 마른 티슈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20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21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속에 주입하는 것. 다만,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영업의 종류 및 영업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 영업의 종류 (법 제2조 정의)

✓ **위생용품제조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 **위생용품수입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

✓ **위생용품 소분업 :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 판매하는 영업** *** 문신용 염료,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 물티슈 제외한 17종**

✓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영업** ***세척제, 행굼보조제**

■ 영업의 신고(법 제3조, 시행규칙 제2·3조)

✓ **(신고기관) 위생용품제조업, 소분업, 소비자리필판매업**은 **관할 지자체**에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와 교육이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

영업의 시설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1])**

구분	주요 시설기준
공통	- 위생용품을 오염시키지 않고 적정한 **온도·습도 유지, 환기시설**
위생용품제조업	- **(작업장)**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의 **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작업장 내의 작업시설은 각각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함 -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함 - **(검사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 구비
위생용품수입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함 - 수입 위생용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도록 규정**
위생용품소분업	-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 **작업장**은 **소분** · 포장실은 **분리 구획, 검사실**은 **제외**

영업의 종류 및 영업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법 제4조, 규칙 제7조)**

✓ 휴업 · 폐업 · 재개업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 하여야 함**(사전신고)**
(단, 휴업기간 1개월 미만은 신고 면제)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할 수 없음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법 제6조, 규칙 제9조)**

✓ 영업자가 사망 또는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영업신고증, 권리이전증명서류**를 갖추고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영업의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 **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7조, 규칙 별표2)**

구분	주요 영업자 준수사항
공통사항	-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 - **작업장 위생관리 및 정기점검, 행정처분 사후조치 이행·보고,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등
위생용품제조업	-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관계서류 등 3년간 보관,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등 - 위탁제조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 점검
위생용품수입업	- 수입관련서류, 거래내역서 등 2년간 보관, 인체유해물질이나 위험물 등과 분리 보관 *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위생용품의 신고필증은 발급일로 부터 5년간 보관 - 관계공무원에게 다른 영업자 수입신고서 열람·사본 등 제공 요구 금지
위생용품소분업	- **영업자간 거래 기록 등 2년간 보관**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 보관 · 운반해서는 안되며, 소분에 사용해서도 안됨** - **영업신고를 하고 제조 · 가공하거나 수입신고한 위생용품만 사용** -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등**

생산관련 보고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

■ **품목제조보고 (법 제3조, 시행규칙 제5·6조)**

✓ **(보고대상)** 사람에게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등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
- **세척제, 행궁보조제, 일회용 기저귀 · 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문신용 염료**

✓ **(보고방법)** **제품생산 시작 전(또는 시작 후 7일 이내) 제품명, 원료·성분명, 제조방법설명서** 등 관할 행정관청에 보고

■ **생산실적 보고 (법 제7조, 시행규칙 제11조)**

✓ **(보고대상)** 모든 위생용품(수출위생용품 포함)

✓ **(보고방법)**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생산 실적**을 관할 행정관청에 보고
- 품목별 생산량, 생산액, 국내판매량, 국외판매량 등

☞ **위생용품소분업은 품목제조보고 및 생산실적 보고 대상 아님**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신고 및 검사**(법 제8조, 시행령 제4조, 규칙 제12~14조)

✓ **(수입신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 한글표시 포장지 등 **구비서류***를 **첨부한 수입신고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

* 한글표시 포장지, 영업신고증사본(해당제품), 국외시험검사성적서(해당제품), 수출계획서(해당제품) 등

✓ **(수입검사)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검사종류	주요 대상
서류검사	-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용, 자사제품제조용** - 정밀검사(부적합품목 제외) 후 **5년 이내** 수입된 동일사동일 수입위생용품 - 부적합 이력 없는 위생용품 중 식약처장이 지정
현장검사	- 서류검사 대상 중 현장검사 필요성이 있는 제품 등
정밀검사	- 최초 수입제품, 기준규격 신설·강화제품, 부적합 후 재수입된 동일사동일제품 - 국내외 안전 정보에 따른 검사 필요 제품 등
무작위표본검사	- 표본추출계획에 따른 대상

위생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교육**(법 제9조, 규칙 제15~17조)

✓ **(교육대상)** 위생용품제조업・수입업・물수건처리업・소분업・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 **(교육시간)** 신규 4시간 / 보수 3시간

✓ **(교육실시기관)**「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한 교육기관

※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대상** : 1차 위반(30만원)

교육기관(교육가능기간)	접속경로	교육방법
한국식품정보원 (12.7., 12.23.)	(누리집) https://foodi.com (전화) 02-405-2800 (서울) 042-820-9000(대전)	집합교육・온라인교육(Zoom)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1.19., 12.10.)	(누리집) http://ktr.or.kr/edu (전화) 1577-0091 내선 4번	
㈜세스코 (12.7. ~)	(누리집) https://www.cescoacademy.co.kr (전화) 02-2140-0288	

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준 및 규격 (법 제10조)**

✓ **위생용품의 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식약처장 고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 **기준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기준 · 규격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 후 소분 판매**

✓ **(국내 제조 제품)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및 검사결과 적합 여부 확인**
* 확인서류 :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등

✓ **(수입제품) 수입신고 여부 및 수입 통관단계 검사결과 적합 여부 확인**
* 확인서류 :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 등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표시기준(법 제11조, 규칙 제18조)**

✓ **"위생용품" 글자,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 그 외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은 고시로 위임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법 제12조, 규칙 제19조, 별표4)**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소비자 기만·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

천연·무첨가 표시·광고 기준 ('26.8.13. 부터 시행 중)
화학적합성품 사용 제품에 **"천연", "자연 " 등 용어 사용**으로 **화학적합성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에 대한 "무", "무첨가" 등의 표현 사용 금지**

✓ 다른 업체 또는 제품 비방 표시·광고

* **소비자 안전에 관한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 등 허용 범위**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기관·단체로 부터 받은 인증, 보증(수입품도 동일)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 **검사주기**(법 제13조, 규칙 제20조, 별표5)

- ✓ **위생물수건 : 월 1회 이상**
- ✓ **품목제조보고대상 : 6개월 1회 이상**
  - *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문신용 염료
- ✓ **그 외 위생용품 : 12개월 1회 이상**

※ 검사주기 적용시점 : **제품 제조일 기준**

■ **검사방법**(법 제13조, 규칙 제20조, 별표5)

- ✓ **(검사항목) 기준·규격 항목**
- ✓ **(검사대상) 제품별 실시가 원칙이나, 동일 기준·규격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경우 위생용품 품목별 실시 가능**
- ✓ **직접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공인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가능**
  - (민간) 식약처 지정 ('25.1월 기준 12개 기관 지정) (정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사항 지정」 고시에 검사항목 확인 가능**
- (기존)소분하는 경우 미생물 검사 실시 → (향후) 소분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 제외

행정처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법 제15조 ~19조, 제22조,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별표 7)

- ✓ **(부과범위)**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6개월 이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 ✓ **(부과대상)** 시설기준 위반, 변경신고위반, 품목보고위반, 준수사항 위반 등
  - 위반행위의 경중,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실시
- ✓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위반사실의 공표**(법 제23조, 시행령 제11조)

- ✓ **(공표대상) 압류 또는 폐기처분,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시**
- ✓ **(공표방법)** 관할관청 홈페이지, 일반일간신문 등
- ✓ **(공표사항)** 영업소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명, 제품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회수 사유 및 방법 등 회수 사실을 일반일간신문, 영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26.12.31 시행)**

02

위생용품 관리법령 주요개정사항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을 소분*하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한 규제 적용**
해당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

★ 현장의 목소리 : 소분만 하더라도 제조업과 동일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등 모두 준수해야 하므로 소분업 신설 필요

✓ **소분업 신설하여 제조·가공하는 영업과 완제품을 소분하는 영업으로 각각 구분**

✓ **자가품질검사 의무 면제, 시설기준 완화 하는 등 규제의 수준을 달리 적용**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5. 12.31. , 시행 '26.12.31.)

제조업과 소분업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용품 소분업(신설)
영업 정의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영업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규제 내용	자가품질검사	O	X
	생산실적보고	O	X
	표시	O	O
	시설기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소분실, 포장실 및 창고 구비	소분작업장, 창고 구비
	준수사항	■ 제조・가공 시 작업장 등 위생 관리, 정기 점검 등 ■ 제조・가공 시 지하수 등을 사용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한 물을 사용	■ 제조업과 대부분 동일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현 행	개 정
위생용품의 정의(제2조)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용품 소분업 :**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문신용 염료,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 물티슈를 제외한 위생용품** ✓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영업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현 행	개 정
영업 신고 (제3조)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은 지자체에 영업신고 및 신고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 영업소명칭, 소재지, 명칭, 영업자 성명	✓ **(현행) + 위생용품소분업,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도 지자체에 영업신고**
생산실적 보고(제7조)	위생용품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영업자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용품물수건처리업자**는 위생용품 생산실적, 위생처리한 실적을 지자체에 보고 (소분업 제외)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현 행	개 정
자가품질검사 (제13조)	위생용품제조업자 위생물수건처리업자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실시	✓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용품물수건처리업자가** **제조·가공**·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에 한해 자가품질검사 실시 (소분업자 제외)
부칙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소분업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개 정
시설기준 (제2조)	✓ **(신설) 위생용품소분업** **(공통 시설기준) 위생용품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 습도 유지, 환기시설** **(소분업 시설기준)** 작업장* 내의 **작업시설은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함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분리하거나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작업장은 소분실 · 포장실, 그 밖에 위생용품의 소분 · 포장에 필요한 작업시설** ■ 분리 : 별도의 공간으로 완전히 나눈 것 ■ 구획 : 칸막이, 커튼 등으로 교차오염이나 외부오염물질의 혼입이 방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 - **창고시설은 갖추되, 검사실은 제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개 정
영업자 준수사항 (제10조)	✓**(신설) 위생용품소분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 - **소분 · 판매하는 위생용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 보관 · 운반해서는 안됨** - **지하수 사용 시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 **제·조 수입업 영업신고를 하고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사용**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위생용품 표시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개 정
공통표시기준	✓ 소분하는 경우, 원래의 표시사항 변경 불가 ✓ 업소명 · 소재지, 내용량의 경우는 소분하는 사항에 맞게 표시 · (국내 제조제품) 소분업소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업소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수입제품) 소분업소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수입업소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국외제조업소 : 영업소 명칭

03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Q 시행일('26.12.31) 이전에 위생용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 어떤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A

- 소분업 신설에 관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26.12.31.부터 이므로 시행일 전에 위생용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 기존과 동일하게 위생용품제조업의 영업신고 후 소분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에는 1년 이내에 위생용품소분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제조업이 필요 없는 경우 제조업은 폐업신고 하면 됨

자주하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Q 벌크 상태 위생용품을 자사제조용으로 수입하여 소분하는 경우에 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A

- 자사제품의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로 소분 행위가 아니므로,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판매용으로 위생용품을 수입한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분업 영업신고를 하면 됨

자주하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Q 기존 위생용품제조업자가 향후 소분만 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 기존 위생용품제조업자 중 소분만 하던 영업자가 제조·가공 없이 소분만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대해 폐업신고 및 위생용품소분업 신고를 하면 됨
- 다만, 제조업 영업을 영위하면서 타 제조회사의 완제품을 소분하려는 경우라면 소분업을 추가로 신고하여야 함

자주하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Q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가 아니면서 소분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 수수료가 면제 되는지?

A

-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법률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개정 규정에 따라 **소분업 영업을 하는 자가 1년 이내에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됨**
- 따라서, 상기 경과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신고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음

자주하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Q 위생용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자가 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할 때,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A

- 영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생용품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업 외에 추가로 위생용품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영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